# 예산편성 작성방법

*산출근거

구체적이고 적정한 기준제시

원x명x회수x…등, 예산을 보고 활동내용을 가늠할 수 있도록 작성

*세목구성(구분)

활동 별, 프로그램 별 세목구성, 구분(목), 세부항목(세목)

# 예산편성 작성방법

권장사례

| 구분 | 세부항목 | 산출근거 | 계 |
|---|---|---|---|
| 사업비 | 연대활동 | 식대<br>5,000x10명x1회=50,000원 | 200,000 |
| | | 다과비<br>3,000x10명=30,000원 | |
| | | 대관료30,000x4시간<br>=120,000원 | |
| | 문화행사<br>참여 | 교통비<br>10,000x10명x2회<br>=200,000원 | 500,000 |
| | | 입장료<br>30,000x10명=300,000원 | |
| 관리비 | | | |
| | | | |

비권장사례

| 구분 | 세부항목 | 산출근거 | 계 |
|---|---|---|---|
| 사업비 | 식대 | 5,000x10명x1회 | 50,000 |
| | 다과비 | 3,000x10명 | 30,000 |
| | 대관료 | 대관료30,000x4시간 | 120,000 |
| | 교통비 | 10,000x10명x2회 | 200,000 |
| | 입장료 | 30,000x10명 | 300,000 |
| 관리비 | | | |
| | | | |

# 1 예산편성 기준

## 1. 각종 행사 및 경비 편성기준

| | | | |
|---|---|---|---|
| 식 비 | 식비(1인 1회) | 실비(상한액 10,000원) | *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및 지출 가능 |
| | 다과비(1인 1회) | 3,000원 | |

*인원 기준 예산의 경우, 지출증빙에 반드시 참여자 명단 첨부

## 2. 강사료 및 회의비, 원고료 편성 기준

| 구분 | | 자격기준 | 편성기준 (상한액) | 비고 |
|---|---|---|---|---|
| 강사료 | 특별 | ·전·현직 장·차관, 총장, 국회의원, 대기업 총수(회장)<br>·이에 준하는 사회 저명인사(단, 사전 승인 필요) | 1시간 20만원 | *지출증빙<br>·이력서<br>·지급조서<br>·이체증<br>·강의 근거 자료<br><br>*요건충족시 소득신고<br><br>*자문비 등은 강사비에 준하여 적용가능<br><br>*강사 교통비(사외)는 실비로 지급 가능 |
| | 1급 | · 대학 조교수(전임강사 포함), 전문대학 부교수 이상<br>· 기업·기관 등의 책임급 연구원 및 중역<br>· 판·검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br>· 3급 이상 공무원 및 4, 5급 공무원 중 박사학위소지자<br>· 사회복지 기관 . 시설장, NGO 대표(사무총장 이상)<br>· 인간문화재, 종교인<br>· 해당분야 경력 20년 이상(박사 5년, 석사 2년 경력 합산) | 1시간 15만원 | |
| | 2급 | · 대학 전임강사, 겸임교수 전문대학 조교수<br>· 4·5급 공무원 / 기업·기관·단체의 부장<br>· 사회복지 기관 및 시설, NGO 중간관리자로서 관련분야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br>· 박사학위 소지자<br>· 해당분야 경력 15년 이상(박사 5년, 서가 2년 경력 합산) | 1시간 10만원 | |
| | 3급 | · 전임 이외의 외래시간 강사<br>· 외국어·전산 등 학원강사<br>· 1~2급에 해당하지 않는 사회인사 | 1시간 7만원 | |
| | 그 외 | ·그 외 단순 인건비(4대 보험 및 소득신고 준수) | 최저임금 적용 (해당년도기준) | |
| 원고료 | | ·A4용지 1매 기준(글씨크기 13point, 문단간격 160%, 상하 여백 15, 좌우 여백 25 기준)<br>·파워포인트로 작성한 경우, 슬라이드 3면을 A4 1매로 산정<br>·원고지로 작성한 경우, 200자 원고지 3.5매를 A4 1매로 산정<br>·단 강의록은 시간당 10매까지만 인정. 최대 2시간 인정. | 1만원 | ·이체증<br>·원고<br><br>*요건충족시 소득신고 |

① 강사료 산정: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하고, 초과하는 시간은 30분 단위로 환산하여 적용(올림을 적용)
예를 들어 2급 강사가 50분 강의를 하였다면 1시간을 기준으로 지급(최대 10만원), 2급 강사가 1시간 15분 강의를 하면 1시간 30분의 기준으로 지급(최대 15만원)

② **본 기준은 최대 기준이며, 이를 초과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없음**(본 기준은 지원금에 해당하는 기준임. 따라서 지원금 기준을 벗어나는 강사료의 경우 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을 자부담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강사료, 회의비, 원고료 등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음)

③ **각종 슈퍼비전 비용, 자문료의 경우 강사료 기준에 준하여 편성 가능**

④ **은행 이체수수료는 자부담이 원칙이나, 해당 세목 산출근거에 편성할 경우 지원금으로 지출 가능**

# 국내지원사업 지원금 세입·세출 내역

| 연월일 | 내 역 | 세 입 | 세 출 | 잔 액 |
|---|---|---|---|---|
| 00-00-00 | 공모배분지원사업 지원금 입금 | 5,000,000 | | 5,000,000 |
| | ○○○ 구입 | | 1,000,000 | 4,000,000 |
| | 이자수입 | 5,000 | | 4,005,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